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한지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103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 의견	2
1.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2

I. 개요

1. 한지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9103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지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3. 19.

(3) 회 부 일 : 2025. 3. 2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근거를 두지 않고 있음.

이에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Ⅱ. 검토 의견

1.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2조의2(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시행과 연계되는 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과 다음 각 호의 정

보시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업무를 위한 것으로 한정
한다.

1. 「주민등록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정
보시스템

2.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
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3.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에 따른 정보시스템

4.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건강검진자료를 처리하는 정
보시스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
른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
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정신건
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은 정신건강증진사업¹⁾ 및 현행법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²⁾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포괄하는 개념³⁾인데, 개정안은 이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복지서비스의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가 정신질환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지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직업지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고용촉진 및 직업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평생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별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정신질환자를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신질환자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정신질환자를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6조(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지원 외에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정신질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 등 통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의 퇴원등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재활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 등 통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와 교육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나. 제15조제6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유사한 입법례로서 감염병의 예방·관리·치료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감염병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의 근거를 두고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를 들 수 있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관리·치료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감염병 환자등,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약품 및 장비 등을 관리하는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이하 “감염병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관리·보유 및 처리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감염병환자등의 인적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다)
2. 감염병 치료내용, 그 밖에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예방·관리·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③ 감염병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예방·관리·치료 업무를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1. 「주민등록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2. 「지역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3.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의2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
4.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3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5.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6. 「결핵예방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결핵통합관리시스템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⑤ 감염병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감염병 관련 정보의 요청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다만, 안 제12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데, 해당 자료의 종류나 범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서 무분별한 자료 수집을 허용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제2항과 같이 수집·관리·보유 및 처리 및 제출의 요청을 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한편,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수용 의견으로서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⁴⁾ 구축·운영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스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연간 약 17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4) p. 8.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 개요 참고

< 개정안에 대한 관계 부처 및 관련 기관 의견 >

부처명	개정안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수집 동의, 개인정보 암호화, 접근권한 관리 등 관리적·기술적 보호 대책 마련을 병행하여 개정안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음. ○동 정보시스템은 정신건강 예방, 회복 등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 제공 기록, 서비스의 질 관리 및 모니터링 지표 등을 관리하는 데에 기여할 것임.
대한의사협회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하여 정신의료기관에도 자료제출의 요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업무가 과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동 정보시스템의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주민등록 전산 정보, 사회보장 정보, 건강검진자료 등 민감한 개인정보의 수집 기준에 대하여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개정안에 따라 수집되는 자료 또는 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보호조치 마련과 함께 시스템 개발이 진행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98

□ 시스템 개요

- (목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⁵⁾의 심리상담 기록·이력관리, 제공기관·인력 관리, 성과지표, 정책통계 등 통합관리 체계 구축
- (명칭) 전국민 마음투자 심리상담 외 중·장기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운영을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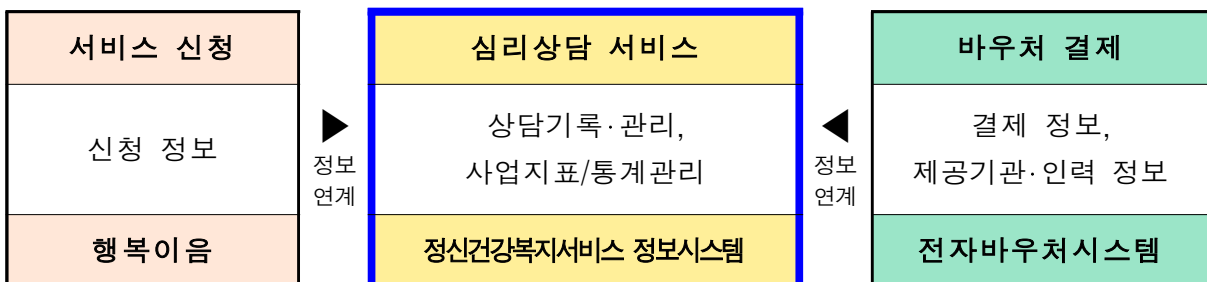
□ 서비스 절차별 정보시스템 역할

- 신규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은 심리상담 기록·이력관리, 지표·통계관리를 담당

<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 주요 기능 >

- ① 대상자 관리 : 신청자 정보 연계를 통한 대상자 관리
- ② 이용자 지원 : 심리상담 이용 전 온라인 자가진단 제공, 상담 내역 정보 조회 등
- ③ 서비스 이력 관리 : 서비스계획서 및 상담 이용기록, 심리상담 전·후 검사결과 등 등록
- ④ 제공기관·인력 관리 : 제공기관·인력 정보 연계를 통한 제공기관·인력 현황 관리
- ⑤ 성과 평가 및 통계 : 마음투자 특화 평가지표로 서비스 성과 평가 및 통계 관리
- ⑥ 관련 정보시스템 연계 : 필수적인 복지정보와 사용자 인증 등을 위한 시스템 연계

- 서비스 신청 - 심리상담 서비스 - 바우처 결제 절차에서 서비스 신청과 바우처 결제는 현행대로 행복이음, 전자바우처시스템을 이용



※ 행복이음,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생성하는 최소한의 필수적인 정보를 연계

5) 보건복지부가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자살 예방 등을 위하여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회당 최소 50분 이상)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이용권)를 지원하는 사업임.